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7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14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임사무명을 “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” 로 구체화하고,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중 도시공원의 경우는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사무가 위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무위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위임사무명을 “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” 로 하고,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되, 제11조에서 별도로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(안 별표 □ 시민건강국).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의 □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건강증진과란에서 “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”을 “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			수정안			
□ 시민건강국				□ 시민건강국			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	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4호	구청장	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4호	구청장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□ 도시교통실 표 주관부서란 중 택시정책과 제12호란부터 제14호란
까지를 삭제하고, 택시정책과 제15호란을 제12호란으로 한다.

별표의 □ 도시교통실 표 주관부서란 중 물류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물류정책과	1.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사용신고 나. 임대허가 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라.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	○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5조 ○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○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○같은 법 제56조의2	구청장
	2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○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	구청장
	3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○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	구청장
	4.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	○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	구청장

별표의 □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보건의료정책과 제6호란 다음에
건강증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 징수 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제4호	구청장
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별표의 도시계획국 표 주관부서란 중 도시계획과란을 삭제한다.

별표의 주택정책실 표 다음에 균형발전본부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균형발전본부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도시활성화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항	구청장

별표의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물재생계획과 제2호란을 삭제하고, 물재생계획과 제1호란 다음에 물순환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물순환정책과	1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	구청장
--------	--	----------------	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교통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주관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근거법령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택시정책과</td> <td colspan="3">1. ~ 11. 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12.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사용신고</u></td> <td>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'이라 한다) 제55조</td> <td rowspan="4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구청장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임대허가</u></td> <td>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'이라 한다) 제52조 제1항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</td> <td>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라.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</td> <td>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13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택시정책과	1. ~ 11. (생 략)			12.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<u>가. 사용신고</u>	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'이라 한다) 제55조	구청장	<u>나. 임대허가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'이라 한다) 제52조 제1항	<u>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	<u>라.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	13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		구청장	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교통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주관부서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근거법령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택시정책과</td> <td colspan="3"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 삭 제 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 삭 제 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택시정책과	1. ~ 11. (현행과 같음)			< 삭 제 >			< 삭 제 >			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택시정책과	1. ~ 11.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.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가. 사용신고</u>	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'이라 한다) 제55조	구청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나. 임대허가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16호까지 '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'이라 한다) 제52조 제1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다.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,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라.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	○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.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· 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			구청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택시정책과	1. ~ 11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 삭 제 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 삭 제 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14. <u>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u>	○ <u>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7조</u>	구청장
	15. (생 략)		
물류정책과	<u>< 신 설 ></u>		
	<u>< 신 설 ></u>		
	<u>< 신 설 ></u>		
	1.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	○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	구청장

개 정 안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u>< 삭 제 ></u>			
	12. (현행과 같음)		
물류정책과	1. <u>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</u>		구청장
	가. <u>사용신고</u>	○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5조	
	나. <u>임대허가</u>	○ 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	
	다. <u>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</u>	○ 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	
	라. <u>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</u>	○ 같은 법 제56조의2	
	2. <u>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u>	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	구청장
	3. <u>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</u>	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	구청장
	4.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	○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	구청장

현 행

시민건강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생 략)		
<u>< 신 설 ></u>			

도시계획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도시계획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제9조제5항	구청장
토지관리과	1. ~ 2. (생 략)		

개 정 안

시민건강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·징수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	구청장

도시계획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<u>< 삭 제 ></u>			
토지관리과	1. ~ 2. (현행과 같음)		

현 행

< 신 설 >

물순환안전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물재생계획과	1. (생 략)		
	2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		구청장
	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(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)	
< 신 설 >			

개 정 안

균형발전본부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도시활성화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항	구청장

물순환안전국

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물재생계획과	1. (현행과 같음)		
	< 삭 제 >		
물순환정책과	1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		구청장
	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	